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様式第2号]

(年 月 日)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① 피인 지자 ① 被認 知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 (한자) 本貫 (漢 字)	성별 性別	(1)남 (2)여 (1)男 (2)女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被認 知者	주소 住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母の氏名 及び 登録基準地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② 인지 자 ② 認知 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 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③인지판결확정일자 ③認知判決確定日 () ()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裁判所 の名称	법원 裁判所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④同意者 (成年後見人)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 号	—	

⑤ 친권자 ⑤ 親権者	(1)부 (1)父 (2)모 (2)母 (3)부모 (3)父母	성명 氏名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 号	—
		성명 氏名		주민등록 번호 住民登録 番 号	—
	지정 일자 指定日	년 월 일 年 月 日	지정 원인 指定 原因	(1) 협의 (1) 協議 (2) ()법원의 재판 (2) ()裁判所の裁判	
⑥ 성.본 계속 사용 ⑥ 氏本貫を 継続して 使用	원인 일자 原因の 日時	년 월 일 年 月 日	원인 原因	(1) 협의 (1) 協議 (2) ()법원의 재판 (2) ()裁判所の裁判	
⑦기타 사항 ⑦その他の事項					
⑧ 신고 인 ⑧ 届出 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1) 부 (2) 모 (3) 유언집행자 (4) 소 제기자 (1) 父 (2) 母 (3) 遺言執行者 (4) 提訴者 (5) 소의 상대방 (6) 기타(자격:) (5) 訴訟相手 (6) その他(資格:)			
	주소 住所				
	전화 電話番号		이메일 電子メール アドレス		
⑨제출인 ⑨提出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欄①: 母の氏名及び登録基準地欄は父が認知した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胎児を認知する場合: 氏名(ハングル)欄に「妊娠○カ月の胎児」と記入し、氏名がある場合は氏名も記入してください。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法第25条第2項に基づき、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た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③란: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欄③: 認知裁判の確定による認知届の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 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和解成立又は和解勧告決定に基づく認知届の場合は「認知判決の確定日」以下の()の中に「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の確定」又は「和解成立」、「和解勧告決定の確定」と記入し、「年月日」欄にその成立(確定)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④란: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欄④: 認知者が成年被後見人の場合は同意者である成年後見人が氏名、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てください。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ただし、2018年6月30日までは認知者が禁治産者の場合、同意者である後見人が氏名、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てください。

⑤란: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欄⑤: 被認知者の親権者が決められてい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지정일자 - 협의에 의한 경우→협의 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指定日 - 協議による場合→協議日、裁判所の裁判による場合→裁判の確定日

: 지정원인 -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指定の原因 - 裁判所の裁判による場合は()の中にその裁判所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⑥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欄⑥: 婚外子が認知された場合は、子の氏・本貫は父の氏・本貫に変更されます。ただし、父母の協議又は裁判所の許可を得て従前の氏・本貫を継続して使用できます。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⑦: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 被認知者が氏と本貫を創設した後、父又は母を認知した場合は父又は母の氏と本貫に従う理由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 死亡した子を認知する場合は、被認知者の死亡年月日、その直系卑属の氏名、生年月日及び登録基準地

-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 被認知者に配偶者又は直系卑属がいる場合はその氏名(ハングル・漢字併記)、生年月日、父母の氏名、被認知者との関係

-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 遺言認知の場合、その旨及び遺言執行者の就任年月日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 韓国人の母と外国人の父の間に生まれた婚外子に対して韓国法に基づき認知届を提出する場合、準拠法所属国名、準拠法との関連理由(例: 準拠法-韓国、子が生まれた当時の母の本国法)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⑨: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1. 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1通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認知判決の確定に基づく認届の場合のみ添付してください。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和解成立又は調停成立に基づく認知届の場合はその和解調書(調停調書)謄本と送達証明書を添付してください(調停に代わる決定又は和解勧告決定の場合は決定謄本及び確定証明書)。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以下の第2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2. 被認知者が生まれた当時、母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及び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を各1通(被認知者の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い又は登録されているか不明の場合は、その母が被認知者が生まれる当時に既婚女性でないことを公証する署名又は2名以上の保証者による近隣知人保証書)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3. 親権者指定の内容を証明する書面1通(次のうち、その指定原因に応じて当該書面を添付)

: 협의에 의한 지정-협의서

: 協議による指定-協議書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 裁判所の決定による指定-親権者指定審判書謄本及び確定証明書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4. 遺言書の謄本(又は録音した遺言を記載した書面)1通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認知者が成年被後見人の場合: 成年被後見人の同意書(ただし、同意した成年被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除く)及び成年被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 ただし、2018年6月30日までは認知者が禁治産者の場合、後見人の同意書(ただし、同意した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除く)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6. 認知者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韓国の方式による認知: 任意認知は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裁判認知は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外国の方式による認知: 認知証書の謄本及び国籍証明書(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各1部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7. 裁判所が氏・本貫を継続して使用することを許可した場合 - 氏・本貫の継続使用許可審判書の謄本1部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氏・本貫の継続使用を父母が協議した場合 - 協議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591号別紙2様式を参照)1部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한]

8.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① 임의인지의 경우

① 任意認知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が欠席し、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提出者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に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② 裁判上の認知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提出者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8項の②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9. 韓国人の母と外国人の父の間に生まれた婚外子に対して韓国法に基づく認知届を提出した場合は、次の書面を全部添付してください。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当該認知行為の準拠法として選択した法と認知当事者との関係を証明する書面1通
예: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例: 子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及び家族関係証明書又は現在の子の定住地を証明する住民登録簿本等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準拠法所属国の権限ある機関が発行する認知の成立要件を満たしている証明書1通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父の国籍等身分を証明する書面1通